#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76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조지연・우재준・박충권

김정재 · 김형동 · 김상욱

윤한홍 • 고동진 • 김종양

권성동 · 신성범 · 엄태영

박덕흠 • 박수민 • 조배숙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1일에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화재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의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무공해자동차가 제작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은 배출허용기준만 충족하면 성능,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상황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환경성, 성능 및 안

전성이 높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에는 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의 보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급 기준을 충족한 무공해자동차에만 보급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의2·제46조의2 신설 및 제58조제3항).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함(안 제58조의9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의2를 제16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의2. "무공해자동차"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나.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무공해자동차의 보급기준 등)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높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무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급기준에 맞도록 무공해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급"을 "보급 또는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는 제46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저 공해자동차에 한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 또는 운행하는 자.

제58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치하는"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 중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를 "무공해자동차"로 한다.

제58조의9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u> 6의2. "무공해자동차"란 저공				
	해자동차 중에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동차를 말한다.</u>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				
	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				
	<u>으로 사용하는 자동차</u>				
	나.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				
	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				
	<u>는 자동차</u>				
	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				
<u>16의2</u> . (생 략)	<u>16의3</u> . (현행 제16호의2와 같				
	승)				
17. ~ 23. (생 략)	17. ~ 2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46조의2(무공해자동차의 보급				
	기준 등) 환경성, 성능 및 안전				
	성이 높은 무공해자동차의 보				

### 제46조의2 (생 략)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② (생 략)

-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 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 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 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 다.
-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

급 촉진을 위하여 무공해자동 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 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급 기준에 맞도록 무공해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

제46조의3 (현행 제46조의2와 같 음)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보급 또는 관리----

-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 1.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는 제46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저공해자동차에 한 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 또는 운행하는 자. ---

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생략)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 라. (생 략)

3. ~ 6. (생략)

④ ~ ⑲ (생 략)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저

- ① (생략)
- ② 환경부장관은 <u>저공해자동차</u>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

1의2. (현행과 같음)
2
설치 또는 운영하는
가. ~ 라.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⑲ (현행과 같음)
세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 <u>무공해자동차</u>

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 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 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 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③ ~ ⑥ (생 략)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 보의 제공 등) (생 략)

<신 설>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 보의 제공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 와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소 방관서의 장에게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 다.